

#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고성미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270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2. 11. 10.

발 의 자 : 고성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도병두, 이인식의원

## 1. 제안이유

임원의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,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함(안 제8조 신설).
- 나. 재정 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- 다.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 신설).
- 라. 다른 법령의 준용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, 제37조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2. 11. 00 ~ 11. 00.

4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8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 대표이사 및 임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,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외부감사) ① 회사는 매년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, 그 결과를 4월말까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9조(종전의 제8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

법률」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다른 법령의 준용)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과 「상법」 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8조(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)</u>  <u>대표이사 및 임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회사 운영에 책무를 지며,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</u></p>
<p><u>제8조(재정 지원) (생략)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9조(재정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u> 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</u></p>
<p><u>제9조 ~ 제11조 (생략)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10조 ~ 제12조 (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</u>  <u>제13조(외부감사) ① 회사는 매년 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, 그 결과를 4월말까지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 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
제12조 · 제13조 (생략)

<신설>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 감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)

제16조(다른 법령의 준용)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과 「상법」 을 준용한다.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

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59호, 2019. 10. 10., 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출자하고, 「상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“금천일자리주식회사”를 설립함으로써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)**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“금천일자리주식회사”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3조(사무소)**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정관)**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
5.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8. 예산과 회계
9. 정관의 변경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공고의 방법
12.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자본금)**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(증자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업)**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식품 관련 제조·판매 사업
2.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

3.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
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(이하 “구민” 이라 한다)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

**제7조(주주권 행사)**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.

**제8조(재정 지원)**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.

**제9조(대행사업의 시행)**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.

**제10조(회계연도)**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1조(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)**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에 위해 사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, 사용용도,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12조(지도 및 감독)**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**제13조(공무원의 파견)**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## 부 칙 (제1059호, 2019.10.1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0. 12. 10.] [법률 제17389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9조(임원)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한다.

**제24조(출자·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설립 목적의 달성, 존립기간의 만료,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
3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
4.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·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25조(지도·감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
2.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,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**제26조(검사·보고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
2.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

**제37조(「상법」과 「민법」의 준용)**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「상법」을 준용하고, 출연기관은 「민법」을 준용한다.